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청소년에게 무료이용 문화시설 등의 제공 활성화〉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3281호)

2024. 11.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청소년에게 무료이용 문화시설 등의 제공 활성화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병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28.
3. 회 부 일 : 2024. 8.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예술·스포츠·동아리 등 문화활동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 후 자율적으로 취미, 심신단련 등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대부분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 등으로만 여가시간을 보내고, 미술·음악·체력단련 등 학원의 경우 강좌비가 비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여가를 활용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또는 문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법인·단체가 청소년 무료이용 문화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청소년에게 무료이용 문화시설 등의 제공 활성화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활동 관련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1조의2(청소년 무료이용 문화시설등의 제공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여가를 활용하여 정서함양 및 심신단련을 위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예술·스포츠 및 기타 문화활동 관련 시설 또는 프로그램(이하 “무료이용 문화시설등”이라 한다)을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에게 무료이용 문화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무료이용 문화시설등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현행법¹⁾은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청소년문화활동을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으며,

법 제10조는 청소년활동시설²⁾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하고,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청소년이용시설³⁾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의 내용 중 “예술·스포츠 및 기타 문화활동”은 현행법 제2조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 2)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1.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0.>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과학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수목원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
 8.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설치·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이용권장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의 청소년활동의 범주에 포함되고, 관련 시설은 청소년이용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적극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정의 실익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첫째, 현행법 제5조 및 제32조4)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
-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① 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청소년활동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60조 및 제61조⁵⁾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청소년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등의 부족은 관련 규정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예산 투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도 예산을 충분히 투입할 경우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⁶⁾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 각종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은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

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적 보조 및 세제상의 혜택 등을 받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조의2⁷⁾는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에 「청소년활동 진흥법」상의 청소년이용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서 청소년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청소년의 우대)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 청소년 우대시설 종류 및 감면 현황(예시) >

구 분	시설 종류	감면 내용
수송시설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20~40% 할인
	여객선	10~50% 할인
문화시설	궁·능	면제~10% 할인
	박물관·미술관·공원	면제~20% 할인
여가시설	공연장·유원지	30~50% 할인
	영화관	1,000원~3000원 등

주: 각 지역 및 기관별로 감면 혜택은 다를 수 있음.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Ⅰ)」, p158.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현행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기존 조항으로도 청소년들의 예술, 스포츠, 문화활동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므로 개정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5